

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10월 일
발의자 : 박주연, 김성현, 김재상, 김정곤, 김정미, 김태근, 박교상, 윤종호, 이수태, 임춘구

1. 제정 이유

- 가. 구미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함과 동시에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하며,
- 나. 나아가 구미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자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최고장인의 선정(안 제3조)
- 나. 최고장인의 자격요건(안 제4조)
- 다. 최고장인의 추천(안 제5조)
- 라. 최고장인의 예우 및 지원(안 제6조)
- 마.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, 구성, 기능(안 제7조, 제8조 및 제9조)
- 바.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, 우대, 홍보, 관리 및 후원(안 제12조,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)

3. 근거법규

-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3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22조
- 「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」 제10조, 제14조, 제15조, 제18조, 제20조, 제22조, 제24조

4. 조례안 : 붙임

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숙련기술자”라 함은 생산·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최고장인”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미시최고장인(이하 “최고장인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최고장인의 선정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구미거주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자를 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.

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하되,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·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최고장인의 자격요건)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자
2. 기술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자
3. 공정·품질 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자
4. 과거 동일 분야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

제5조(최고장인의 추천) 다음 각 호의 자는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.

1. 시장
2. 구미지역 기업체의 장
3.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
4. (사)대한민국명장회 대구·경북지회장
5.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장

제6조(예우 및 지원) 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장려금은 매월 20만원씩 3년간으로 한다. 다만, 구미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,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최고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최고장인이 구미지역 관련 분야의 직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⑥ 최고장인으로서 민·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장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-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해년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해촉 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숙련기술자 양성 업무 과장이 된다.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2.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
- 3.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) ① 시장은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 단체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.

② 시장은 숙련기술자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숙련기술자 우대) ① 시장은 숙련기술자에게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숙련기술자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각종 교육·훈련 시 최고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
제14조(숙련기술자 홍보 등) 시장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
1. 숙련기술자 발굴 및 확산 지원
2. 숙련기술자 개발·생산한 제품 및 품질 홍보 지원
3.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, 워크숍 개최
4. 제12조에 따른 숙련기술자 단체에 의한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과 관련된 행사 홍보

제15조(숙련기술자 관리 및 후원) 시장은 최고장인 및 숙련기술자들이 시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「구미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 계 법 규]

□ 「숙련기술장려법」

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)

-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,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 (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)

-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.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2.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
- 3.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

-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④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,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,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 (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)

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(傳授)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, 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 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,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14조 (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)

①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 (창업 및 취업의 지원)

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,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,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 (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)

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·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
2. 인사제도 개선
3. 학습조직 구축
4.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,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

② 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.

제22조 (포상 및 상금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·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훈장·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」

제10조 (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)

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”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(需給)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, 재료, 건축,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.

제14조 (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)

법 제1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”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,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1.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(鑄造), 금형(金型) 및 용접 등의 분야
2.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·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
3. 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
4. 그 밖에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

제15조 (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)

-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 보유 현황, 나이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한다.

제18조 (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)

-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한다.
-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,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,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(이하 “모범사업체”라 한다)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소기업, 중기업과 그 외의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 선정 신청의 자격, 신청방법, 선정업체 수, 선정기준,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2조 (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,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,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체의 선정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제24조 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, 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해당 일시장려금,

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이미 지급된 일시장려금, 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, 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0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, 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: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

2.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

③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육성 및 지원) ①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업, 기업인 등이 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, 창업보육센터, 정보화촉진, 경영안정,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인 단체 육성 등의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.